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4. 22 선고 2015가합501789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신용보증기금

피고 1. 주식회사 A

2. B

3. C

4. D

5. E

변론 종결 2016. 3. 25.

판결 선고 2016. 4. 22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A, B,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,518,307원 및 그 중 23,912,910원에 대하여는 2013. 12. 17.부터, 469,758,951원에 대하여는 2014. 12. 30.부터 각 2016. 1. 22.까지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가.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1/10 지분에 관하여 2014. 4. 28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 D는 피고 C에게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. 4. 30. 접수 제18655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가. 피고 C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4. 7. 3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 E은 피고 C에게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. 7. 3. 접수

제1031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○ 피고 C, D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 판결)

○ 피고 주식회사 A, B, E :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재판장판사윤상도

판사명선아

판사이봉락

별지